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550

발의연월일: 2021. 1. 21.

발 의 자: 안호영·이상직·노웅래

임종성 • 양정숙 • 송갑석

김윤덕 · 홍성국 · 이광재

송옥주 의원(10인)

제안이유

2005년 도입된 퇴직연금 제도는 외형적으로는 지속적으로 성장하였으나 적립금 운용에 대한 전문성 부족 및 노동자의 무관심으로 인하여 과도하게 단기·원리금보장상품 위주로 운용되어 왔음.

이러한 운용 형태는 최근의 저금리 기조와 맞물려 퇴직연금 적립금의 낮은 수익률로 이어져 노동자들의 노후소득재원 확충이라는 퇴직연금 도입취지를 실현하지 못하는 상황임.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가 전문성을 갖춘 적립금 운용기관(자산운용기관)과 적립금 운용에 관한 투 자일임계약을 체결하여 운용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기업의 적립금 운 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적립금 운용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함.

또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적립금 운용방법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사전에 정한 운용방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적립금이 운용될 수 있도록 사전지정 운용제도를 새로 도입하여 운용방법의 선택권을 넓혀 금융지식이 부족 한 근로자의 노후 자산형성을 지원하고자 함.

아울러, 수수료의 부과 수준 및 기준 등이 합리적으로 정해질 수 있 도록 함으로써 노동자들의 노후소득재원을 확충하고 퇴직연금제도를 통한 노동자들의 노후생활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설정 및 운영 등

- 1)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의 가입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는 제도(사전지정운용제도)에 관한 사항을 정의하고, 이를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규약에 포함하도록 함(안 제2조제14호·제15호 및 제19조제1항제4호의2).
- 2)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손실 가능성과 예상 수익이 합리적 균형을 이루고 비용이 수익에 비해 과대하지 아니한 운용방법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의 집합 투자증권으로 투자설명서상 법에서 정한 내용이 운용계획으로 명시 되거나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 일임업자와 적립금 운용에 관한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여 운용하는 방식으로 운용하는 운용유형 중 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친 운 용방법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승인을 받

- 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에게 제시토록 함(안 제21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 3)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전지정운용제도를 설정한 사업의 가입자에게 사전지정운용방법에 관한 자산배분 현황 및 위험·수익구조 등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토록 하고, 가입자는 제공받은 사전지정운용방법 중 하나 이상의 운용방법을 선택하여 본인이 적용받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지정하도록 함(안제21조의3제1항·제2항).
- 4) 사전지정운용방법에 의한 적립금 운용 절차, 해지 방법, 사전지정 운용요건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1조의3제3항부터 제5항까지).
- 5)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가 스스로 적립금 운용방법으로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선정할 수 있도록함(안 제21조의4 및 제24조제4항).

나. 적립금 운용에 관한 투자일임계약

- 1)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일정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자(자산운용기관)와 적립금 운용에 관 한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의2제1항).
- 2) 자산운용기관은 적립금의 중장기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분산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용방법과 기준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하도록 함(안 제29조의2제3항).

- 3) 자산운용기관에게 취급실적을 제출토록 하고 적립금 운용 수익률 등을 공시토록 하는 등 자산운용기관에 책무를 부여하고 자산운용 기관의 등록 취소 사유를 명시하고 등록이 취소된 경우 사용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안 제33조의2 및 제36조의2).
- 4) 사용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하지 않은 자산운용기관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부여된 책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산운용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규정함(안 제44조제3호의2 및 제48조제2항제4호).

다. 수수료

- 1) 운용관리업무 등을 수행함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 및 자산운용기 관이 받는 수수료는 적립금의 운용 수익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 로 정하도록 함(안 제29조의3제1항·제2항).
- 2) 고용노동부장관은 퇴직연금사업자 및 자산운용기관에게 수수료 산정 기준 등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 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를 규정함(안 제29조의3제3항 및 제 48조제2항제4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4호 및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4. "사전지정운용제도"란 가입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 사전에 지정한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 15. "사전지정운용방법"이란 사전지정운용제도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하기 위하여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운용방법을 말한다.

제19조제1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사전지정운용제도에 관한 사항

제21조의2부터 제21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사전지정운용제도의 설정) ①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손실가능성과 예상수익이 중·장기적으로 합리적 균형을 이루고 수수료 등의 비용이 예상되는 수익에 비해 과대하지 아니한 운용방법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운용방법(이하 "운용유형"이라 한다)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승인받아야 한다.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에 따른 집합투자 기구의 집합투자증권으로서 투자설명서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내용이 운용계획으로 명시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유형
 - 가. 투자목표시점이 사전에 결정되고 운용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투자위험이 낮은 자산의 비중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자산배분을 변경하거나 위험수준을 조절
 - 나. 투자위험이 상이한 다양한 자산에 분산투자하고 금융시장 상황 및 각 집합투자재산의 가치변동 등을 고려하여 주기적으로 자산배분을 조정함으로써 집합투자재산의 위험을 관리하고 장 기 가치 상승을 추구
 - 다. 단기금융상품 등에 투자하여 집합투자재산의 손실가능성을 최 소화하고 단기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
 - 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공공투자계획, 관련 사업 및 정책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 등에 투자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투자
 -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운용
-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에 따른 투자 일임업자와 적립금 운용에 관한 투자일임계약(「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7조에 따른 투자일임계약을 말한다. 이

하 "투자일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운용하는 방식으로 고용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유형

- ② 퇴직연금사업자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 퇴직연금 관련 전문가로서 퇴직연금 및 자산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포함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 ③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사용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제21조의3(사전지정운용제도의 운영) ①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 연금사업자는 사전지정운용제도를 설정한 사업의 가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 하여야 한다.
 - 1. 사전지정운용방법에 관한 자산배분 현황 및 위험·수익 구조
 - 2.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사전지정운용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항
 - ② 가입자는 제1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사전지정운용방법 중 하나 이상의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선택하여 본인이 적용받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의2제1항제1호의 운용방법만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 가목 또는 나목

- 의 운용유형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③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가 확정기여 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날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운용방법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립금 운용방법의 기간 만료일부터 4주가 경과할 때까지 가입자가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하지 않을 경우 사전지정운용방법에 따라 적립금이 운용됨을 통지하여야 하고, 가입자가 해당 통지를 받은 이후 2주 이내에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하지 않을 경우 하당 가입자의 적립금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한다. 이 경우 가입자가 스스로 운용방법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로 선정한 것으로 본다.
- ④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는 가입자는 언제든지 제 21조제1항에 따라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할 수 있다.
- ⑤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전지정운용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 전지정운용방법에 따라 운용되는 가입자의 적립금은 가입자에 대한 통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변경된 사전지정운용방 법에 따라 운용할 수 있다.
- ⑥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운용현황 및 수익률의 공시, 해지 방법의 고지, 그 밖에 사전지정운용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4(가입자의 사전지정운용방법 선정)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

도의 가입자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적립금의 운용방법으로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의 사전지정운용방법 중 제21조의2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어느 하나 이상의 운용유형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제21조의2제1항제1호의 운용유형만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 가목 또는 나목의 운용유형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입자가 선정한 사전지정운용방법이 제21조의3제5항 전단에 따라 변경될 경우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에 대한 통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가입자의 적 립금을 변경된 사전지정운용방법에 따라 운용할 수 있다.

제24조제4항 전단 중 "제21조를"을 "제21조 및 제21조의2부터 제21조의 4까지의 규정을"로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호"를 "제1호의2의 업무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때에만 해당하고, 제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사용자 또는 가입자"를 "사용자(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적립금 운용에 관한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자산운용기관을 말한다) 또는 가입자(제21조의3에 따라 제21조의2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 적립금이 운용되는 경우에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일임업자를 포함한다)"로 한다.

1의2. 사전지정운용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업무

제29조의2 및 제2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9조의2(적립금 운용에 관한 투자일임계약의 체결) ① 확정급여형퇴 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자(이하 "자 산운용기관"이라 한다)와 적립금 운용에 관한 투자일임계약을 체결 할 수 있다.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에 따른 투자일임업자로서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업 인가를 받았거나 같은 법 제249조의3제1항에 따라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하였을 것
 - 2. 운용하는 투자일임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의 규모 등이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 ②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사용자는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③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자산운용기관은 사용자를 대신하여 적립 금의 운용방법을 선정한 후 이를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산운용기관이 선정하는 적립 금의 운용방법은 적립금의 중장기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분산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용방법 및 기준 등을 따라야 한다
 - ④ 적립금 운용 현황의 통지 등 투자일임계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9조의3(수수료) ① 퇴직연금사업자 및 자산운용기관이 제28조제1항에 따른 운용관리업무, 제29조제1항에 따른 자산관리업무, 제29조의2 제1항에 따른 적립금 운용업무 수행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의 수행에 따라 사용자 및 가입자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해당 업무의수행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과 적립금의 운용 손익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자 및 가입자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부과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가입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하여 퇴직연금사업자 및 자산운용기관에게 수수료 부과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33조의2 및 제36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33조의2(자산운용기관의 책무) ① 자산운용기관은 이 법을 준수하고 사용자 및 가입자를 위하여 성실하게 그 업무를 하여야 한다.
 - ② 자산운용기관은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계약의 내용을 지켜야한다.
 - ③ 자산운용기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일임계 약의 취급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자산운용기관은 매년 말 적립금 운용 수익률 및 수수료 등을 고 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 제36조의2(자산운용기관에 대한 등록취소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자

산운용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명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해산한 경우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9조의2에 따른 등록을 한경우
- 3. 제29조의2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산운용기관은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간 자산운용기관 등록을 할 수 없다.
- ③ 퇴직연금제도 관련 업무를 중단하려는 자산운용기관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이 말소된 자산운용기관은 말소된 날부터 2년간 자산운용기관 등록을 할 수 없다.
-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을 받거나 등록말소를 신청한 자산운용기관은 투자일임계약의 해지 안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자 및 가입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4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36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산운용 기관

제48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33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책무를 위반한 자산운용기관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의 변경) 이 법 시행일 이전에 확정기여 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이 법 시행일 이후 1년 이내에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 제19조제1항제4호의2의 개정규정의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u>.</u>
1. ~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u><신 설></u>	14. "사전지정운용제도"란 가입
	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
	스로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
	사전에 지정한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는 제도를 말
	한다.
<u><신 설></u>	15. "사전지정운용방법"이란 사
	전지정운용제도에 따라 적립
	금을 운용하기 위하여 제21조
	의2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운용방법을 말한다
제19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제19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의 설정) ① 확정기여형퇴직연	의 설정) ①
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제4조제3항 또는 제5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	
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	
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 7. (생 략) ② (생 략) <신 설> 4의2. 사전지정운용제도에 관 한 사항

5. ~ 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1조의2(사전지정운용제도의 설정) ①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손실가능성과 예상수익이 중·장기적으로 합리적 균형을 이루고 수수료 등의 비용이 예상되는 수익에 비해 과대하지 아니한 운용방법 중 다음 각 호 중 하나이상의 요건을 갖춘 운용방법 (이하 "운용유형"이라 한다)을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승인받아야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 권으로서 투자설명서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운용계획으로 명시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유형

- 가. 투자목표시점이 사전에 결정되고 운용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투자위험이 낮은 자산의 비중을 증가 시키는 방향으로 자산배 분을 변경하거나 위험수 준을 조절
- 나. 투자위험이 상이한 다양
 한 자산에 분산투자하고
 금융시장 상황 및 각 집합
 투자재산의 가치변동 등
 을 고려하여 주기적으로
 자산배분을 조정함으로써
 집합투자재산의 위험을
 관리하고 장기 가치 상승
 을 추구
- 다. 단기금융상품 등에 투자 하여 집합투자재산의 손 실가능성을 최소화하고 단 기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등 관련 법 령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 치단체가 추진하는 공공투자계획, 관련 사업 및 정책에 따른 사회기반시

설사업 등에 투자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투자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방법으로 운용

-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에 따른 투자일임업자와 적립금 운용에 관한 투자일임계약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7조에 따른 투자일임계약을 말한다. 이하 "투자일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운용하는 방식으로 고용노동부렁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유형
- ② 퇴직연금사업자가 제1항 각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경우 퇴직연금 관련 전문가로서 퇴직연금 및 자산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인정되는 자를 포함하는 등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따라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사

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전지정운 용방법을 사용자에게 제시하여 야 한다.

제21조의3 (사전지정운용제도의 운영) ① 운용관리업무를 수행 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전지 정운용제도를 설정한 사업의 가 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 1. 사전지정운용방법에 관한

 자산배분 현황 및 위험·수익

 구조
- 2.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 정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사전지정운용제도

 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가입자는 제1항에 따라 정
- ② 가입자는 제1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사전지정운용방법중하나 이상의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선택하여 본인이 적용받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

의2제1항제1호의 운용방법만 사 전지정운용방법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 가목 또는 나 목의 운용유형이 포함되어야 한 다.

③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가 확 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 한 날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 른 운용방법에 대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적립금 운용방 법의 기간 만료일부터 4주가 경과할 때까지 가입자가 운용 방법을 스스로 선정하지 않을 경우 사전지정운용방법에 따라 적립금이 운용됨을 통지하여야 하고. 가입자가 해당 통지를 받 은 이후 2주 이내에 운용방법 을 스스로 선정하지 않을 경우 해당 가입자의 적립금을 사전 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한다. 이 경우 가입자가 스스로 운용 방법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선정한 것으로 본다.

④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 금을 운용하는 가입자는 언제든

지 제21조제1항에 따라 적립금 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할 수 있다.

⑤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전지정 운용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이경우 해당 사전지정운용방법에 따라 운용되는 가입자의 적립 금은 가입자에 대한 통지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변경된 사전지정운용방법에 따라 운용할 수 있다.

⑥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운용현황 및 수익률의 공시, 해지 방법의 고지, 그 밖에 사전지정운용 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4(가입자의 사전지정운 용방법 선정) ① 확정기여형퇴 직연금제도의 가입자는 제21조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의 운용방 법으로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 는 퇴직연금사업자의 사전지정 운용방법 중 제21조의2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어느 하나 이

<신 설>

제24조(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설 정 및 운영 등) ① ~ ③ (생략)

④ 개인형퇴직연금제도 적립금의 운용방법 및 운용에 관한 정보제공에 관하여는 제2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 본다.

<u>상의 운용유형을 사전지정운용</u> 방법으로 선정할 수 있다. 다 만, 제21조의2제1항제1호의 운 용유형만 사전지정운용방법으 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 가목 또는 나목의 운용유형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입자가 선 정한 사전지정운용방법이 제21 조의3제5항 전단에 따라 변경 될 경우 운용관리업무를 수행 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 에 대한 통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가입자의 적립금을 변경된 사전지정운용 방법에 따라 운용할 수 있다. 제24조(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설 정 및 운영 등) ① ~ ③ (현행 과 같음) ----- 제21조 및 제21조의2부터 제21조의4까지 의 규정을 -----. ----

제28조(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 의 체결) ①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 또는 가입자는 퇴직연금사업자와 다음 각 호의업무(이하 "운용관리업무"라 한다)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제2호의 업무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때에만 해당한다.

1. (생 략) <u><신 설></u>

2. · 3. (생략)

4. <u>사용자 또는 가입자</u>가 선정한 운용방법을 제29조제1항에 따른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전달하는 업무

제28조(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
약의 체결) ①
,
제1호의2의 업무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때에만
<u>해당하고, 제2호</u>
1. (현행과 같음)
1의2. 사전지정운용제도의 설
정 및 운영에 관한 업무
2.·3. (현행과 같음)
4. 사용자(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적립금 운용에 관한 투
자일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에는 자산운용기관을 말한
다) 또는 가입자(제21조의3에
따라 제21조의2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 적립금이 운용되는
경우에는 투자일임계약을 체
결한 투자일임업자를 포함한
다)

- 5. (생 략)② (생 략)
- <신 설>

- 5. (현행과 같음)
- ② (현행과 같음)
- 제29조의2(적립금 운용에 관한 투자일임계약의 체결) ① 확정 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 게 등록한 자(이하 "자산운용기관"이라 한다)와 적립금 운용에 관한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에 따른 투자일임업자로서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집합 투자업 인가를 받았거나 같은 법 제249조의3제1항에 따라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하였을 것
 - 2. 운용하는 투자일임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의 규모 등이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 일 것
 - ②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사용자는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

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자 산운용기관은 사용자를 대신하 여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선정 한 후 이를 운용관리업무를 수 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전 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산운 용기관이 선정하는 적립금의 운용방법은 적립금의 중장기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분산투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 용방법 및 기준 등을 따라야 한다.

④ 적립금 운용 현황의 통지 등 투자일임계약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제29조의3(수수료) ① 퇴직연금 사업자 및 자산운용기관이 제2 8조제1항에 따른 운용관리업 무, 제29조제1항에 따른 자산 관리업무,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적립금 운용업무 수행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 무의 수행에 따라 사용자 및

가입자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해당 업무의 수행에 따라 발생 되는 비용과 적립금의 운용 손 익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자 및 가입자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부과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가입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하여 퇴직연 금사업자 및 자산운용기관에게 수수료 부과기준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 제33조의2(자산운용기관의 책무)
 ① 자산운용기관은 이 법을 준수하고 사용자 및 가입자를 위하여 성실하게 그 업무를 하여야 한다.
 - ② 자산운용기관은 제29조의2 제1항에 따른 계약의 내용을 지켜야 한다.
 - ③ 자산운용기관은 고용노동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 일임계약의 취급실적을 고용노

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④ 자산운용기관은 매년 말 적립금 운용 수익률 및 수수료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제36조의2(자산운용기관에 대한 등록취소 등) ① 고용노동부장 관은 자산운용기관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명하거나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u>1. 해산한 경우</u>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9조의2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 3. 제29조의2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을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산운용기관은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간 자산운용기관 등록을 할 수 없다.

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저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1. ~ 3. (생 략) <u>< 신 설 ></u>

4. (생 략)제48조(과태료) ① (생 략)

③ 퇴직연금제도 관련 업무를
중단하려는 자산운용기관은 고
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의 말소
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이 말소된 자산운용기관은
말소된 날부터 2년간 자산운용
기관 등록을 할 수 없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을 받거나 등록
말소를 신청한 자산운용기관은
투자일임계약의 해지 안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4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② -----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 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3. (생략) < 신 설 >

③ (생 략)

- - 1. ~ 3. (현행과 같음)
- 4. 제33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책무를 위반한 자산운 용기관
- ③ (현행과 같음)